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2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병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원중, 김재진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
이종환, 임춘대, 허 훈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지역 내 생산 자재나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 내 생산 자재 · 장비 · 인력 사용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,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지역 내 생산자재·장비·인력 사용의 권장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·장비·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〈신 설〉</u>	<u>제5조의2(지역 내 생산자재·장비·인력 사용의 권장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·장비·인력을 우선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</u>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업체 수주를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지역 내 생산 자재나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 권장(안 제5조의2)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